

건설사무소·항행정보시설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
소속·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21조 관련)

소속	명칭	위치	관할구역
부산지방 해양수산청	부산항건설사무소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, 경상남도(김해시·밀양시 및 양산시와 창원시 중 부산항에 한정한다)
인천지방 해양수산청	경인해양수산사무소	인천광역시	경인항
여수지방 해양수산청	여천해양수산사무소	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	광양항 중 여수지역
	광양해양수산사무소	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광양시 및 순천시
마산지방 해양수산청	통영해양수산사무소	경상남도 통 영시	경상남도 중 통영시·거제시 및 사천시·고성군·남해군 및 하동군
동해지방 해양수산청	속초해양수산사무소	강원특별자 치도 속초시	강원특별자치도 중 속초시·고성군 및 양양군
	목호해양수산사무소	강원특별자 치도 동해시	목호항 및 삼척항
군산지방 해양수산청	장항해양수산사무소	충청남도 서천군	장항항
목포지방 해양수산청	진도항행정보시설사 무소	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진도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진도군·완도군·강진군·장흥군 및 해남군(화원면은 제외한다)
	완도해양수산사무소	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완도군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완도군
포항지방 해양수산청	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 소	경상북도 포 항시	포항신항